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9. 9. 20.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년 7월 13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1999년 7월 15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66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1999년 9월 1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 가. 개정이유
 -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수혜범위 확대와 효율적인 기금 운영으로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 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1) 학자금 용자에 대하여(제3조제3항)
 - 학자금 용자대상 범위에 성적 기준을 정한 현행 제도는 사업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성적 기준을 삭제
 - 2) 용자금 대부신청에 대하여(제6조제2항)
 - 용자금 대부신청시 연대보증인 기준을 영등포구 거주에서 서울특별시 거주로 기준 완화하여 수혜대상 범위 확대
 - 3) 지도 감독에 대하여(제12조제1항)
 - 용자금을 지원받은 기구 및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반기별 1회로 완화하여 용자가구 및 수탁금융기관의 부담 감소
 - 4) 용자금의 반환에 대하여(제16조제1호)
 - 용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사유중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라 함은 실적을 판단하기가 불명확한 용어이므로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송성만)

동 조례(안)은 영등포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 사항으로서 저소득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본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제3조제3항의 용자대상중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의 학자금 용자대상 요건의 재학생적기준 규정은 중·고등학교 종합석차산정제도가 폐지되어 삭제하고, 제16조제1호의 용자금 반환규정의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라는 사업성과의 판단이 어렵고 불명확하여 삭제하였으며, 제6조2항의 용자금대부신청 보증인은 동일 구 관내 거주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서울특별시 거주자로 완화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6
----------	----

제출년월일 : 1999. 7. 13.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 이유

-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의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수혜범위 확대와 효율적인 기금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학자금 용자대상에 대하여(제3조제3항)
학자금 용자대상 범위에 성적 기준을 정한 현행 제도는 사업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성적기준을 삭제
- 나. 용자금 대부신청에 대하여(제6조제2항)
용자금 대부신청시 연대보증인 기준을 영등포구 거주에서 서울특별시 거주로 기준 완화하여 수혜대상 범위 확대
- 다. 지도감독에 대하여(제12조제1항)
용자금을 지원받은 가구 및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반기별 1회로 완화하여 용자가구 및 수탁금융기관의 부담 감소
- 라. 용자금의 반환에 대하여(제16조제1호)
용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사유중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라 함은 실적을 판단하기가 불명확한 용어이므로 삭제

3. 참고사항

- 가. 관련근거 : 제3차 영등포구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개정 결정
[기예05090-1589('99.5.28)호]
- 나. 합의사항 : 없음.
- 다. 예산조치 : 필요 없음.
- 라. 조례(안) : 따로붙임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제2조제4호에 의한 학자금을 용자하는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생으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

제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대부신청시에는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제1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구청장은 자금을 용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반기별 1회 지도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용자대상) ③제2항제4호에 의한 학자금을 용자하는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생으로 <u>학교성적 인문계 고등학교 30% 이내, 실업계 고등학교는 50% 이내인 자</u>로 하고, <u>대학생은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으로서 학교성적이 80점 이상(평균 "B" 학점 이상)인 자</u>로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p> <p>제6조(용자금 대부신청) ②제1항의 대부신청시에는 <u>같은</u> 구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p> <p>제12조(지도 감독) ①구청장은 자금을 용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p> <p>제16조(용자금의 반환) 구청장은 용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용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u> 2. <u>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u> 3. <u>자금을 용자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u> 4. <u>용자를 받은 자가 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u> 	<p>제3조(용자대상) ③제2항제4호에 의한 학자금을 용자하는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생인 자로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p> <p>제6조(용자금 대부신청) ②..... <u>서울특별시에</u></p> <p>제12조(지도감독) ①..... <u>반기별 1회</u></p> <p>제16조(용자금의 반환)</p> <p>..... (현행과 같음)</p> <p><삭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